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71221] [www.kketnypdak.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7년 10월 26일] [8829hs@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년 07월 25일]

क्क찬쌀통닭

정 보 공 개 서

(주)채움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 채움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443번길 14 (서운동)]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1588-6926]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32-653-8869]

[가맹본부의 담당부서 전화번호 : 032-653-882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7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12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3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0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4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사항	36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8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39
※ 별첨 1. 필수공급품목리스트	
※ 별첨 2. 가맹금예치신청서	
※ 별첨 3. 가맹점사업자의 인근가맹사업자현황표	
※ 별첨 4. 바로전 사업연도 공급가 상하한	
※ 별첨 5. 판매상품 및 권장판매가격	
※ 별첨 6.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별첨 7.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알림마당’-‘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소			
(주) 채움 푸드	깍찬쌀통닭 ¹⁾ 외3건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443번길 14 (서운동)			
	법인설립 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4년 3월20일	2014년 4월1일	임채용	1588-6926	032-653-8869
	법인등록 번호	121111-0266859	사업자등록번호	130-86-91204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임채용	깍찬쌀통닭 외 4건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443번길 14 (서운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채용	1588-6926	032-653-886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김광태	깍찬쌀통닭 외 4건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443번길 14 (서운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채용	1588-6926	032-653-886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 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1) 당사는 2023년 01월에 영업표지 [수상한탕수육]을 [깍찬쌀통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칭	क्락찬쌀통닭	-
상호	क्락찬쌀통닭 ○○점	-
상품 (서비스표)	 क्락찬쌀통닭	-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을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2,891,616	1,111,232	1,780,383	16,274,870	446,020	429,266
2022	1,835,923	1,179,606	656,317	11,722,523	-1,133,378	-1,124,065
2023	1,644,382	1,173,445	470,937	8,985,244	-164,062	-185,380

그 근거 자료는 별첨 6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관련	임채용	대표이사	2014년~현재	대표이사	경영 총괄
	김광태	전무	2017년~현재	사내이사	경영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2년 12월 31일	2	-	2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채움푸드	가맹사업경영	2021. 11. ~ 현재	[모락떡볶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등록번호 20215410)
			2021. 11. ~ 현재	[The맛있는파닭]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등록번호 20215408)
			2020. 6. ~ 2022. 4.	[क्क्찬치킨]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등록번호 20201757) (2022. 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2017.11 ~ 현재	[क्क्찬쌀통닭] ²⁾ 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등록번호:20171221)
			2014.04 ~ 현재	[코리엔탈갯잎두마리치킨] ³⁾ 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등록번호:20140706)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의 브랜드 [क्क्찬쌀통닭]의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귀하가 가맹계약서상에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2) 2023년 01월에 영업표지를 [수상한탕수육]에서 현재 영업표지로 변경하였습니다.

3) 2016년 11월에 영업표지를 [코리엔탈갯잎치킨]에서 현재 영업표지로 변경하였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23년 03월 1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영업표지 변경전이 [수상한탕수육]의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은 2017.11월이며, 상기한 가맹 사업을 시작한 날은 영업표지를 현재 [क्क्찬쌀통닭]으로 변경 후 가맹사업 개시일을 기재하였습니다..

2. क्क्찬쌀통닭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성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채움푸드	수상한탕수육	임채용	2017.10 ~ 2023.01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443번길 14 (서운동)
(주)채움푸드	क्क्찬쌀통닭	임채용	2023.01 ~ 현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443번길 14 (서운동)

3. क्क्찬쌀통닭 업종

영업표지	업종	
क्क्찬쌀통닭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क्क्찬쌀후라이드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क्क्찬쌀통닭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0	0	0	0	0	0	3	3	0
서울	-	-	-	-	-	-	1	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2	2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क्क्찬쌀통닭 가맹점수

(단위: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9	-	-	9	-	0
2022년	0	0	0	0	0	0
2023년	0	3	0	0	0	3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현황

당사는 [क्क्찬쌀통닭]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 서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 본부	(주)채웁 푸드	코리엔탈갯잎 두마리치킨	20140706	치킨	272/0	196/0	154/0
		모락떡볶이	20215410	분식	0/0	29/0	39/0
		The맛있는파닭	20215408	치킨	10/0	24/0	22/0
		क्क्찬치킨	20201757	치킨	0/0	-	-

상기한 क्क्찬쌀통닭은 2023년 01월에 [수상한 탕수육]의 영업표지 명칭을 변경하여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क्क्찬치킨은 2022년 04월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자진취소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에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전년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전체	3	134,304	10,810	159,829	15,983	106,247	6,743	3곳대상
서울	1	-	-	-	-	-	-	5곳미만
부산	-	-	-	-	-	-	-	
대구	-	-	-	-	-	-	-	
인천	-	-	-	-	-	-	-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2	-	-	-	-	-	-	5곳미만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물류공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추정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가맹점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추정비율(2.09)

당사의 모든 가맹점은 6개월 이상 1년미만 영업한 곳으로 해당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연간매출액 환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매출액 환산식 : 실제 발생한 매출액/영업일수 x 365(일)

직전 사업연도 말에 광역시도 기준 가맹사업자가 5곳미만인 지역은 지역별 연간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깍찬쌀통닭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깍찬쌀통닭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3개	292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11. 가맹점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 예치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계양지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96 강북프라자 1층	1599-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인 **[별첨3 가맹금예치신청서]**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 까지]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채움푸드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여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을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क्क्찬쌀통답]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없음	-	-	-
개점 전 교육비	2,200	계약체결시	교육 개시 전	· 교육 개시 전 : 전액 반환 · 교육 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천원/VAT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0	계약 체결시	- 가맹금, 로열티,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 종료 후 조치 (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함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금액
합계	3,200
가맹비	-
교육비	2,200(VAT포함)
계약이행보증금	1,000(VAT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1 필수공급품목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VAT별도) / 66㎡(2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5,500		-	-	-
인테리어	가맹점사업자 자율구매	-	-	가맹점 사업자 자율 구매		
설비	가맹점사업자 자율구매	2,750	138			
집기	가맹점사업자 자율구매	330	-			
간판/ 싸인물	가맹점사업자 자율구매	770	-			
초도물품	협력업체	1,100	-			
홍보물	가맹본부	550	-	추후 별도 계약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위 표의 금액은 20평 (1평=3.3㎡) 기준으로 당사가 사업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며, 면적 크기 및 개별 점포의 여건에 따라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간판공사는 인허가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도사항

도시가스공사, 전기승압공사, 소방공사, 냉난방기, 외부공사, 화장실공사, 테라스, 샷시, 조형물, 철거공사, 상하수도 등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32-653-8829) 및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복합상권 추천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과 가맹희망자의 자본에 맞춰 점포개발을 진행 적합한 점포라 판단시 입지로 선정)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입지선정에 있어 가맹본부에 의뢰할 시 별도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가 점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은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 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	제한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잔금
금액(천원)		총액 10%	90%
납부일		계약일	개점 7일전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없음			
광고/판촉	가맹본부	세부내용은 정보공개서 V.9. 광고 및 판촉활동 참조		광고 실시 전	광고시행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교육 개시 후에는 소멸성 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VII-1 내용 참조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위 표에 기재된 비용 내역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조리 및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회계 장부 열람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월 1회	문의 : 운영팀 (032-653-8829)
위생관리	제품의 신선도 매장청결조사 평가	월 1회	
회계조사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반기 1회	문의 : 재경팀 (032-653-8829)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원/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필요시 합의하여 결정	재계약 체결시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 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 여 잔액을 상환함	-가맹금, 로열티, 물품 대금 미지급 -계약종료후 조치 (영업표지철거 등 원상 회복의무)의 미이행	
추가교육비	필요시 합의하여 결정	재계약 체결시	교육시작 3일전 계약해지	소멸성	추가교육 필요시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क्क्칸쌀통당]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채움푸드]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신규계약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개점비 및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재개점비	실비	(이벤트,홍보판촉물 인력지원)의 실비적용
계약이행보증금	1,000(VAT없음) 또는 보증보험증권	양도인의 가맹계약의 잔여기간을 부여함
교육비	2,200(VAT포함)	

이러한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본 정보공개서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노하우 사용 및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 시안과 가맹본부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

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 및 전산시스템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무단 상표 사용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당 금 삼십만(W300,000)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출원 및 등록된 디자인 등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당 금 삼십만(W300,000)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의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구입 및 임차

귀하가 [क्क्칸쌀통당]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V.3.3) 상품/용역명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경고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또는 상품공급중단 3회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 제한내용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책임 :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1회 위반: 구두경고 2회 위반: 서면시정 3회 위반: 계약해지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2회이상 위반시 행정처분은 물론 가맹계약즉시해지 사항입니다.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다른 가맹점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습니다. 귀하가 아래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품 명	권장가격	가격통보방법	비고
별첨 5. 참조		개별 통지	2024.07.기준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닭고기 튀김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क्क्찬쌀통닭] [코리엔탈갯잎두마리치킨] [The맛있는파닭]	해당사항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단위 동별 또는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거리 500m로 하되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가맹계약서 명시 (필요시 별지에 지도로 표시)

상기 영업지역은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 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①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② 가맹점사업자 미동의 → 영업지역 변경 불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신규 점포 입점 불가)
※ 당사가 영업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귀하께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

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क्क्칸쌀통닭’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क्क्칸쌀통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으며, 온라인 판매를 하지않아서 모든 매출은 가맹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꼭찬쌀통닭]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속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체결시에 계약승인비 금 2,000,000원(부가세별도)을 가맹본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승인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의 효과는 상실됩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1항 1목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1항 2목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4조 1항 3목 가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4조 1항 3목 나
○ 까찬쌀통닭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4조 1항 3목 다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4조 1항 3목 라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제27조1항1목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27조1항2목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제27조1항3목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개설비용을 지급을 지체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제27조1항4목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제27조1항5목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27조1항6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 또는 동종업종을 영위한 경우	제27조1항7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7조1항8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영업방침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7조1항9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7조1항10목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공급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제27조1항13목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제27조1항12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7조1항15목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제27조1항17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총 2개월에 걸쳐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 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5조2항1목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제35조2항2목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5조2항3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명령	제35조2항4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2항5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2항6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5조2항7목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5조2항8목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5조2항9목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 상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갱신거절될 수 있음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능조건	양도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승인신청 → 당사 담당팀검토 → 승인여부통지(14일이내) → 양도양수 당사자 및 가맹본부의 양도양수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문의 : 운영팀 (032-653-8829)

가맹본부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할 경우 양수인과 신규가맹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 보다 다소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 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 · 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 습니다.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 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비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 원칙으로는 대행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 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 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하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자는 가맹본 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1)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귀하가 [क्क्찬쌀통닭]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닭고기튀김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당사 담당팀검토(시장조사포함,30일가량소요)→ 허가여부통지→완료	문의: 운영본부 (032-653-8829)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00~ 24:00(12시간)	원칙적으로 주 6일 다만, 가맹점의 특성, 지역특색, 상권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영업일수 및 영 업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의: 운영본부 (032-653-88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 담당팀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에 의합니다.

4) 가맹본부가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청결(7항목)	담당자 매장방문->청결도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평가 ->완료	4회/1주일	문의: 운영본부 (032-653-8829)	
C/S(8항목)	암행방문 ->주문 ->친절도 확인->관리 및 점검표 작성->평가->조치->완료	2회/1주일	문의: 운영본부 (032-653-8829)	
위생관리(11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또는 암행방문->위생 점검표작성->평가->완료	3회/1주일	문의: 운영본부 (032-653-8829)	
품질관리(8항목)	담당자 매장방문->품질확인->관리 표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2회/1주일	문의: 연구개발 (032-321-5292)	
안전관리(10항목)	담당자 매장방문->안전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완료	1회/2주일	문의: 운영본부 (032-653-8829)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조리 및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까찬쌀통닭]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가맹본부	가맹점		
전국 전체 광고	브랜드·상품 광고	50%	50%	광고계획 공고->가맹점 참여여부 확인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전국단위 대중매체
	브랜드·상품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75%	25%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		
지역단위 광고, 개별광고		-	100%	행사계획 수립 ->본부승인 및 지원여부 결정 -> 완료	지역별 대중매체
가맹점 지역별 판촉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다만, 경우에 따라서 가맹본부에서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원 가능함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광고 및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전협의와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 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

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42조)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 오백만 (₩ 5,000,000)원을 지급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0일 정도가 예상되며, 그때까지의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포함/10평 기준)

구 분	내 용	기 간	비 용
합계		30일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D-30	없음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 담당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점포유무 및 자금규모 확인 / 대상지역소개	D-29~ D-28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입지 지역분석(의뢰시) 및 확정	D-15 (의뢰시실시)	점포 임대비용
가맹계약	- 가맹계약 및 점포 계약 - 1차 투자비 산출	D-13 ~D-14	없음
가맹금 등 지급	- 가맹금 - 개점 전 교육비 - 계약이행보증금	D-13	개점 전 교육비 2,200 보증보험증권 또는 1,000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D-13 ~D-1	
개점 전 교육	- 점포 운영 교육 - 집기 등 입고	D-13 ~D-1	
오픈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D-day	없음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 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점포개발은 점포 미보유시 실시되며 상권분석보고서는 필요시 제출하여 드립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및 **가맹본부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사항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본부 사정에 따라 1~2명의 인력이 개점 판매촉진행사를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당사의 비용부담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위원(supervisor)을 파견하여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시장조 사, 고객관리, 위생 관리, 회계, 외부대 응 등의 경영전반지도	자문요청(계획)제시→ 요청(계획)자료검토후 , 자문일자조율→가맹 본부담당자방문→실 태 파악및교육→자문 결과자료공유	가맹본부	문의:운영본부 (032-653-8829)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가맹점부담 (가맹점사업자가 희망하여 교육인원이 추가될 경우, 실비추가부담)	

4.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교육	회사소개, 음식가공, POS사용, 입금방법 등	실습교육	개점전	필수
보수교육	신메뉴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필요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당사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천원/VAT포함)	비 고
신규교육	1~2일	2,200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계약시 이수
보수교육	1일	실비	필요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희망하여 교육인원이 추가될 경우 교육실비가 추가됩니다.

4. 교육,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1조에 따라 3일 내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 받을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끝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센터(1670-0007) 또는 가맹거래과(044-200-4938)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franchise.ftc.go.kr>)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